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하남시장(도시정책과)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해석상 혼선 및 중복표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기반 시설의 부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

“법령 간 연계성 확보 및 해석상 혼선방지를 위해, 근거조항을 변경(법 제28조제4항→법 제28조제5항)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나. 재공고 열람사항(안 제8조제2항)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운영상 혼선 방지를 위해 법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문구로 수정”

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9조)

“법령에 정의된 내용의 중복으로 해당조항 삭제”

라. 공공시설등 취약지역(안 제15조의3)

“근거 조항 개정사항 반영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3제1항제5호→제6조의3제2항제1호마목)”

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19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비오톱 현황조사)는 법률에 정의되지 않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방지를 위해 삭제”

바. 상업지역 내 공공기여 유도(안 제56조)”

“상업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정책목적 달성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사전협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 도모를 위한 공공기여 유도 제도 마련”

사. 조문상 용어, 표기 오류 정비(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40조, 제5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안 이유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해석상 혼선 및 중복표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따라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형식 측면에서는 개정안 전체 별표 표기 방식이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내용 측면에서는 표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

표의 내용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다수 있음.

예를 들어 (별표 13)

원 안	수 정 안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u>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u> 공장으로서 <u>별표 16 제2호</u>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u>으로서 별표 12</u>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 예시는 조례의 인용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서 시행령에 따른 별표 16 제2호를 의미하지만, 우리시는 읍·면 지역이 없는 현실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별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사례임.

○ 아울러, 안19조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바이오툰 현황조사)는 법률에 정의되지 않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방지를 위해” 현행 조문의 삭제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바이오툰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와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문의 ‘삭제’가 아닌 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